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근거 마련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2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총괄의견	4
2. 목적 및 구성 체계	11
3. 정의 등	13
4. 7개 피해지역 진상조사	17
5. 7개 댐 피해지역의 구제 및 지원	24
6. 보칙	31
7. 벌칙	35
8. 부칙	37
※ 참고자료	39
1. 재난지원금제도 개요	39
2. 2020년 홍수피해 관련, 지역별 재난지원금 현황	40
3.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41
4. 2020년 홍수피해 분쟁조정 현황	4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9일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5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 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 · 대청댐 · 섬진강댐 · 용담댐 · 합천댐 · 주암댐 · 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 ·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총괄의견

2020년 장마기간은 역대 최장기간(총 54일) 대량강우(687mm, '73년 이후 2위)를 동반하여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8월 초 집중 호우 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등의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음.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수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²⁾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무상지원 금액은 전체 피해복구비용 대비 30~50% 수준에 불과했으며,³⁾ 어업피해가 재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참고자료1: 재난지원금 제도 개요) 참조

2)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진안·무주·순창·남원,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합천,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국민권익위원회 의안 제2021 - 3호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⁴⁾되는 등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⁵⁾.

이에 관계 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를 실시⁶⁾하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액 산정 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⁷⁾, 침수로 인한 1차적 피해(건물, 시설, 농기계 등)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실시되었고, 육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피해, 담수화에 따른 어장 피해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홍수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⁸⁾.

한편, 2020년 섬진강 댐 등 5개 댐 하류지역 침수피해 이후에도 2023년 7월, 대청댐 방류 및 수위상승(만경강, 전주천, 익산천)으로 인한

3) 역대급 '수해 피해'에도...정부지원 기준은 25년째 '제자리', 한국경제, 2020.10.7., 한국방재협회보고서 (2019) 지역별 지원금액은 < 참고자료2: 댐하류 홍수피해에 대한 지역별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 참조

4) 당시 댐 방류로 인한 내수면 어업피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5)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09896호)”이 발의되었음(임기만료 폐기)

6)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10~'21.7까지 관계부처 공동 조사용역 시행. 조사결과 5개 댐 하류 17개 시·군 158개소에서 집중호우, 댐방류, 제방유실, 제방고 부족, 내수배제 불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홍수피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7) 2020년 홍수피해 분쟁조정 내역(집단분쟁,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자료)

구분		조정신청 (A)		조정 제외 (B)	조정결정 (C=A-B)		신청인 이의신청 (D)	조정성립 (E=C-D)	
		신청인 (명)	신청액 (억원)	대상자 (명)	대상자 (명)	결정액 (억원)	대상자 (명)	대상자 (명)	지급액 (억원)
합천댐	합천	586	186.0	20	566	109.8	2	564	109.7
남강댐	진주, 사천	189	23.2	127	62	6.5	-	62	6.5
섬진강댐	구례 등 8개 시군	6,014	2,963.3	283	5,731	1,103.7	9	5,722	1,102.0
용담댐	무주 등 5개 시군	1,609	568.5	226	1,383	270.0	51	1,332	266.3
대청댐	청주	32	5.7	10	22	1.23	-	22	1.2
합계	17개 시군	8,430	3,746.7	666	7,764	1491.2	62	7,702	1,485.8

8)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2025. 9. 25,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주·익산지역 침수 피해⁹⁾, 2025년 7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강진만 해양오염과 어업 피해¹⁰⁾ 등 매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댐 방류로 하류 지역 및 연안지역 주민들은 상시적인 재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지난 2020년 이후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①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진상조사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②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유사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의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금강 하류 용안 등 익산 북부권,대청댐 방류'직격탄' 800여 이재민 발생, 벼 재배면적 27%·시설원예 60% 이상 침수 (익산신문, 2023. 7. 18)

10) 사천시의회 "남강댐 방류 실질적 보상해야"이번 방류 단순한 자연재해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프레시안, 2025. 8. 4)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

구분	포항지진(특별법)	태안유류오염(특별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보상방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신청인	포항지진 당시 포항 거주자, 근로 활동자, 부동산 등 소유자	피해주민단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피신청인	대한민국(산업통상부)	국제기금(IOPC Found),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	대한민국(기후부에너지환경부)
사고발생	'17.11 , '18.2	'07.12	'94(주)유공 판매 '06~'10까지 원인 규명 실패 '11.4.(역학조사)
조사	'18.3 ~'19.3 (12개월)	-	'11.4~'11.8(역학조사,4개월) '11.9~'11.11(동물실험,3개월)
처리기간	'20.9.21 ~'21.8.31(12개월) * '22 상반기 지급완료	'08.1.15 ~ '18.6.15(10년5개월)	'20.9.25 ~ 현재(진행 중)
갈등의 주요내용	포항지진의 원인,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등	방재비용배상, 재산피해배상, 휴업손실배상, 환경피해배상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역학적 상관관계 규명
해소방안	정부조사연구단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조사	삼성중공업 3,067억원 지역발전기금 출연('18년 12월 분배)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상결정 방법	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소송 결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배상금액	4,939억원	2,308.6억원 (선사책임제안액)	2,093억원 ('26.1.31.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첫째, 제정안은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재난 예방 교육 사업 시행 등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직접적인 피해구제 이외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 재난 예방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피해구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과 피해의 공간적 범위, 피해의 기준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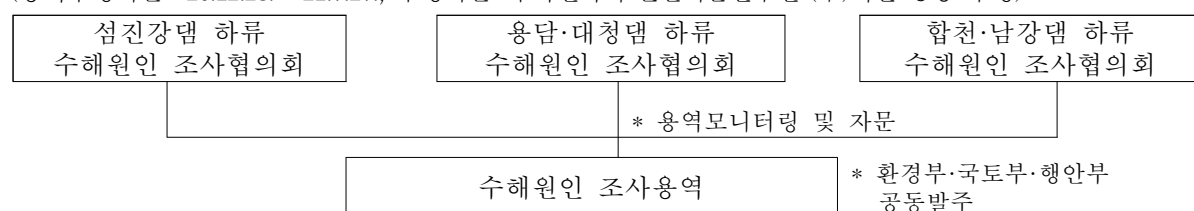
제정안은 이를 각각 “2020년 이후” 발생한 피해,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 등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발생한 5개 댐(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피해 사건의 경우 2021년 당시 환경부·국토부·행안부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주한 수해원인조사 용역¹¹⁾을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2021년에 개정¹²⁾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법”이라 함)상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 및 보상까지 완료되었다는 입장임¹³⁾.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향후에도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신속 구제 측면에서

11)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및 조사용역

(용역수행기간: '20.12.28.~'21.7.27., 수행기관: 수자원학회·건설기술연구원·(주)이산 공동 수행)



12)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피해에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자원시설(댐 등)로 인한 환경분쟁을 추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2021. 4. 1)하였으며, 부칙규정을 통해 2020년 5월 15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

13)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5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다룬 첫 사례, 5.7개월만에 조정 완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2. 3. 22.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환경분쟁조정제도 및 특별법 제정의 피해구제 사례 비교]

구분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광암들 ¹⁴⁾ 농작물 냉해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 [포항지진 피해구제]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원인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 (원인조사, 6개월)					정부조사연구단 (원인조사, 12개월)						
구제절차	신청	→	사실조사	→	조정	→	배상	신청	→	조사심의	→	배상
	(즉시)		(4개월)		(4개월)		(즉시)	(2개월)		(6개월)		(19개월, '21.4~'22.10)
구제기간	8개월 (8.8억원 배상으로 합의 종결)					27개월 (법령제정기간, 지원기준 마련에 17개월 추가 소요)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셋째, 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제정안의 진상조사위원회 및 구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기능이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¹⁵⁾와 중복된다는 의견임.

안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안 제13조(구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¹⁶⁾에 따라, 홍수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환경분쟁

14) (합천 광암들 피해배상) 낙동강 창녕합안보 수문개방에 따른 수위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관련, 합천군 광암들 농민 46명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18.9)해 피해배상 요구액의 60% 정도인 8.79억원 배상 결정('19.5)

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제정안과 같은 피해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¹⁷⁾¹⁸⁾

또한, 안 제23조(사무국의 설치 등)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¹⁹⁾에 따라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직제 관련 법령이 아닌 개별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행정안전부 의견) 제정안의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사위원회’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문위원회로 판단되는 바, 홍수피해를 포함한 환경분쟁조정 전반을 심의하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 필요

18) (기획예산처 의견) 환경분쟁조정법 상 환경분쟁위원회가 수자원시설로 인해 발생한 하천수위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관한 분쟁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목적 및 구성 체계

제정안은 ‘남강댐 · 대청댐 · 섬진강댐 · 용담댐 · 합천댐 · 주암댐 · 동화댐 등 7개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다음과 같이 총 5장 36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1) ▪ 정의 (§2) ▪ 국가 등의 책무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2장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	▪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 (§5) ▪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6) ▪ 진상조사 (§7) ▪ 조사신청 (§8) ▪ 각하결정 (§9) ▪ 조사의 개시 (§10) ▪ 조사의 방법 (§11) ▪ 고발 및 수사요청 (§12)
제3장 7개 댐 피해지역 구제 및 지원	▪ 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13)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4) ▪ 피해자 인정 신청 등 (§15) ▪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 (§16) ▪ 지원의 원칙 (§17)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8)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19)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20)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21)
제4장 보칙	▪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22) ▪ 사무국의 설치 등 (§23) ▪ 업무의 위임·위탁 등 (§24) ▪ 비밀준수 의무 (§25) ▪ 자격사칭의 금지 (§26) ▪ 진상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27)

구 분	세부 조문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28) ▪ 운송비·여비 등 (§29)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30) ▪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31)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32) ▪ 부당이득의 환수 (§3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
제5장 벌칙	▪ 벌칙 (§35) ▪ 과태료 (§36)
부 칙	▪ 시행일 (§1) ▪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2)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에서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개념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안 제5조~제12조)에서는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진상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장 7개 댐 피해지역 구제 및 지원’(안 제13조~제21조)에서는 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구체적인 피해구제·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보칙’(안 제22조~제34조)에서는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무국의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벌칙(안 제35조~제36조)에서는 의무에 상응하는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정의 등

제정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등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개념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7개 댐”이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을 말한다. 2.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란 2020년 이후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말한다. 3. “7개 댐 피해지역”이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5조에 따라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어업 활동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의 피해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2020년 이후 7개 댐²⁰⁾(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로 정의하여 해당 피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7개 댐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근로활동 등을 하고 있던 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 중 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따라 7개 댐 과다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피해자”로,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7개 댐 피해지역”으로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 202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당초 제정안의 7개 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댐 방류와 하류 지역 침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컸던 5개 댐(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을 중심으로 결과도출 및 배상 결정하였음. 이에 제정안은 당시 방류 피해가 지적되었으나 보상과정에서 제외된 2개댐(주암댐·동화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종전에 발의된 법안(「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09896호)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안 제3조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의 피해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 하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정안은 정의 규정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을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구제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며,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사건, 기간 등 특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나²¹⁾ 개정안은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

21) 유사입법례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기간을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는 기간을 “2020년 이후”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 8월 5개 댐 과다방류 피해”, “2025년 7월 남강댐 과다방류 피해” 등 기간과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는 “7개 댐 피해 지역”과는 달리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공간적 기준이 되는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범위도 그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댐의 “과다방류”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세밀한 댐 운영이 필요하나 기준이 모호한 “과다방류”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여 운영상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질 경우, 댐 운영이 위축되고 재난방어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4.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

제정안 제2장(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 안 제5조~제12조)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진상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정안은 먼저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업무 범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 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 원인 규명, 제도와 법령 등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국무총리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조사 활동을 완료(1회,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등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 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 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2020년 발생한 5개 댐(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홍수피해의 원인 조사 및 피해대책 마련의 경우, 2021년 환경부·국토부·행안부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주한 수해원인조사 용역²²⁾을 통해 이미 완료되었다는 입장이며²³⁾,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조사하는 경우 중복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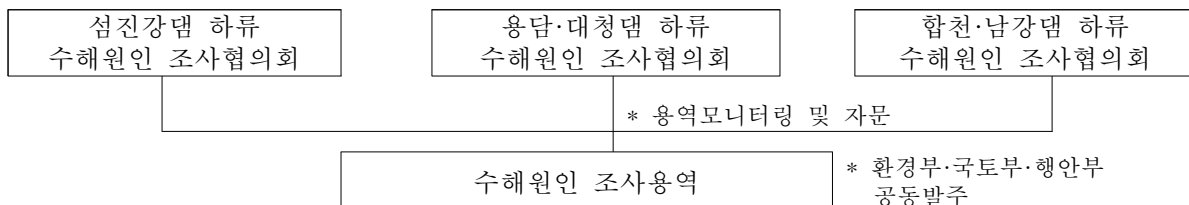
나. 진상조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다음으로 제정안은 진상조사의 범위와 조사신청, 조사의 개시, 조사의 방법, 고발 및 수사요청 등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7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7개 댐 과다방류

22)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및 조사용역

(용역수행기간: '20.12.28.~'21.7.27., 수행기관: 수자원학회·건설기술연구원·(주)이산 공동 수행)



23)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년 수해 피해 5개 댐에 대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 '21.8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주민들은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2.3월 분쟁위 조정으로 조정금액 지급까지 완료되었다고 밝힘.

24)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기능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중복되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에 따라, 홍수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동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심의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제출되었음.

제 정 안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7개 댐 방류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조사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각하결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진술청취

제 정 안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7개 댐 과다 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와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진상조사의 범위를 피해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댐 방류 과정의 적정성 조사, 법·제도 등의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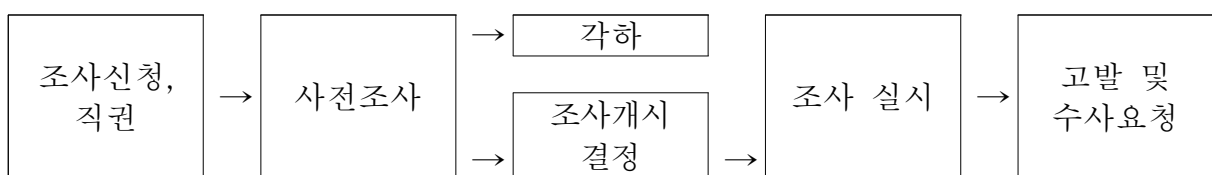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피해자의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제11조는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사대상자·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등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조사의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의 절차



제정안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일정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진상조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이후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21. 4. 1)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피해자의 신속구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환경분쟁조정 & 특별법 간 피해구제 사례 비교]

구분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광암들 ²⁵⁾ 농작물 냉해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 [포항지진 피해구제]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원인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 (원인조사, 6개월)					정부조사연구단 (원인조사, 12개월)						
구제절차	신청	→	사실조사	→	조정	→	배상	신청	→	조사심의	→	배상
	(즉시)		(4개월)		(4개월)		(즉시)	(2개월)		(6개월)		(19개월, '21.4~'22.10))
구제기간	8개월 (8.8억원 배상으로 합의 종결)					27개월 (법령제정기간, 지원기준 마련에 17개월 추가 소요)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5) (합천 광암들 피해배상)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개방에 따른 수위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관련, 합천군 광암들 농민 46명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18.9)해 피해배상 요구액의 60% 정도인 8.79억원 배상 결정('19.5)

5. 7개 댐 피해지역의 구제 및 지원

제정안 제3장(5개 댐 피해지역의 구제 및 지원, 안 제13조~제21조)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한 7개 댐 피해지역 구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피해구제 절차와 피해구제·지원의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임.

가.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피해구제 절차

제정안은 먼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3조(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구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제 정 안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7개 댐 피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부처의 공무원, 7개 댐 피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 청취,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피해자의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피해지역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피해구제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댐으로 인한 하천수위

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²⁶⁾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중복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조사 및 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고,²⁷⁾ 관련 법령²⁸⁾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²⁹⁾, 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이러한 의견까지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하 생략)

제51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27) 본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하영제의원 대표발의(2021. 5. 4)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2109309)의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 설치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5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특별법안 입법예고 마감, 이 법 없어도 피해 원인 진단했다.(NEWS25, 사천인터넷뉴스, 2021. 4. 28.)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기획재정부

나. 피해구제·지원의 근거

다음으로 제정안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구제 및 지원의 내용 및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6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의 보상을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로 침체된 7개 댐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는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소득지원금, 시설복구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는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7개 댐 피해지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피해구제·지원 등과 관련한 국가의 신속이행 및 피해자의견청취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 지원금 지급, 상담지원, 금융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개인의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7개 댐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방안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재건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원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사입법례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조달 및 예산편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원금의 분담 주체를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³⁰⁾

30)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21.3.15.>

6. 보칙

제정안 제4장(보칙, 안 제22조~제34조)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사무국 설치,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및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2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 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

제 정 안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진상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0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3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제 정 안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사무국의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운송비·여비 등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29조)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의 금지, 조사대상자 및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책임면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안 제30조 및 제34조) 조사·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및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이행의무를 규정함으로써(안 제31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데 기여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짓·부정·착오에 의한 지원금 수령에 대한 환수를 규정함으로써(안 제32조 및 제33조) 지원금의 중복지급 및 부당수급 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³¹⁾에 따라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원칙적으로 둘 수 없으며,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령에서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직제)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벌칙

제정안 제5장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조사 등의 활동과 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제출 등의 이행의무,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금지의무 등에 상응하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안 제35조 및 제36조).

제 정 안
제35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6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 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제정안에 따른 법정형 수준은 유사입법례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³²⁾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고,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등의 권한 행사 시 발생하는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3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①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8. 부칙

제정안 부칙은 하위 법령의 제정 및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유예하고, 법률의 시행일 전에 본칙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설립 등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준비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임(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는 법 시행을 위해 법령 및 조직 등을 정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진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법 시행과 함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본칙³³⁾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

33)안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로서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사입법례³⁴⁾를 참고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34)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1 재난지원금제도 개요³⁵⁾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명(사망·실종·부상), 주택, 주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

구분	구호비	생계비	주 택		농경지	
			침수 복구	파손 복구	유실 복구	유실 복구
지원금	인당 8천원/일	45~168만원	90만원	100~1,300만원	3,593원/m ²	1,160원/m ²

□ 재난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 산출
-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수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

시설별	단위	①복구단가 (천원 '08 기준)	②지원율 (국고+지방비)	③지원기준지수 (①×②/1,000)	④피해물량 (지원기준)	⑤재난지수 (③×④/1,000)	⑥재난지원금 (천원)
계						10,655	11,000
주택	동	30,000	30%	9,000	1동	9,000	
비닐하우스	m ²	7,940	35%	2.78	500m ²	1,390	
구호비(1인)	인	5,000	100%	5	53일	265	

※ 예) 주택1동 전파, 비닐하우스 500m²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장기여행·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시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3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2

2020년 홍수피해 관련, 지역별 재난지원금 현황³⁶⁾

□ 재난지원금 : 총액 49,007백만원(국고 34,259, 지방 14,746)

시군명	재난지원금(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계	49,007	34,259	14,746
충북 옥천군	764	540	225
충북 영동군	1,182	827	354
충북 청주시	12,119	8,483	3,636
충남 금산군	3,473	2,431	1,042
전북 무주군	1,479	1,035	444
전북 진안군	2,739	1,917	822
전북 임실군	849	597	252
전북 순창군	1,839	1,287	552
전북 남원시	10,521	7,365	3,156
전남 곡성군	5,171	3,619	1,551
전남 구례군	6,390	4,473	1,917
전남 광양시	248	174	74
전남 순천시	214	150	64
경남 합천군	1,362	953	408
경남 진주시	188	94	94
경남 사천시	72	36	36
경남 하동군	397	278	119

36) 자료: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3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³⁷⁾

□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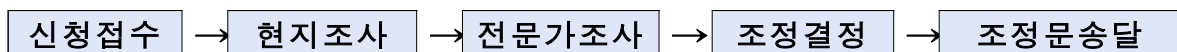
- (환경분쟁 복잡성) 환경피해 증가와 피해원인의 다양·복잡화로 인과관계 규명 등 당사자간 분쟁해결 어려움
- (사법적 구제 한계) 손해배상소송 제기시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액 산정, 인과관계 입증 등 곤란, 다수비용과 장기간 소요도 부담
- (공정성·신속성 확보) 합의제 행정기관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과 같은 직권주의와 준사법적 절차로 사인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 제도 개요

- (조정대상)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관련분쟁
 -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 수위의 변화**(하천법상 하천시설, 수자원법상 수자원시설)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유형)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 알선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 : 조정위가 **조정안을 마련, 합의 권고**(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과)
 - 재정 : 재정위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액 결정**(60일간 소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 효과)
 - 중재 : 중재위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 협의** 후 배상 결정(확정판결 효과)
- (조정관할) 중앙환경조정위와 지방환경조정위가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지방환경분쟁조정위
○ 1억원 초과 환경피해 분쟁의 재정·중재 ○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 조정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재정·중재 ○ 지방환경분쟁조정위 불복 사건	○ 환경분쟁의 알선 및 조정(調停) ○ 1억원 이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중재

○ 분쟁조정 절차



3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4

2020년 홍수피해 분쟁조정 현황³⁸⁾

- (집단분쟁사건) 5개 댐하류 17개 지역에서 분쟁조정 신청(8,430명, 3,747억원)
신청인 7,764명에게 1,491억원 지급 결정(하천·홍수관리구역 등 666명 조정제외)
- 지급대상자 62명 이의신청 ⇨ 7,702명에게 1,486억원(국가분 853억원)
지급(조정성립)

구분		조정신청 (A)		조정 제외 (B)	조정결정 (C=A-B)		신청인 이의신청 (D)	조정성립 (E=C-D)	
		신청인 (명)	신청액 (억원)	대상자 (명)	대상자 (명)	결정액 (억원)	대상자 (명)	대상자 (명)	지급액 (억원)
합천댐	합천	586	186.0	20	566	109.8	2	564	109.7
남강댐	진주, 사천	189	23.2	127	62	6.5	-	62	6.5
섬진강댐	구례 등 8개 시군	6,014	2,963.3	283	5,731	1,103.7	9	5,722	1,102.0
용담댐	무주 등 5개 시군	1,609	568.5	226	1,383	270.0	51	1,332	266.3
대청댐	청주	32	5.7	10	22	1.23	-	22	1.2
합계	17개 시군	8,430	3,746.7	666	7,764	1,491.2	62	7,702	1,485.8

- (개별분쟁사건) '23.2까지 42건 분쟁사건 신청(623명, 223억원), 18건 조
정제외(550명), 24건 조정결정(73명, 19.7억원)

구분	조정신청 (A)			조정제외 (B)		조정결정* (C)			조정중 (D=A-B-C)			비고
	건 수	신청인 (명)	신청액 (억원)	건 수	대상자 (명)	건 수	대상자 (명)	결정액 (억원)	건 수	신청인 (명)	신청액 (억원)	
합천댐	1	1	0.07	-	-	1	1	0.03	-	-	-	
남강댐	1	1	111.47	-	-	1	1	8.33	-	-	-	미술품 피해
섬진강댐	9	563	88.37	3	515	6	48	4.05	-	-	-	어업 피해2건
용담댐	29	56	23.23	15	35	14	21	7.28	-	-	-	어업 피해1건
대청댐	2	2	0.31	-	-	2	2	0.01	-	-	-	
합계	42	623	223.45	18**	550	24	73	19.7	-	-	-	

* 조정결정대상자 중 이의신청 인원은 없음

** 어업피해(하천 내 피해, 3건), 기존 집단분쟁사건과 신청인 또는 피해내역이 동일한 사건 등(15건)은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3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